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221호 2010. 7. 7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고시 제2010-87호 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..... 1
- 정선군고시 제2010-89호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매장·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고시.. 2

【공 고】

- 정선군공고 제2010-366호 방법용 CCTV 설치·운영을 위한 행정예고..... 3
- 정선군공고 제2010-376호 정선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(안)공고..... 6
- 정선군공고 제2010-380호 2010 착수 호명지구 받기반정비사업공고..... 8
- 정선군공고 제2010-382호 덕우리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취소 공고..... 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3, FAX:560-2592)

정선군고시 제2010-87호

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

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에 의거 2010년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. 06. 25

정 선 군 수

□ 고시내역

구 분	시가표준액	세 율	세 액	비 고
소	3,500,000원/두	1,000분의10	35,000원	600kg
돼 지	250,000원/두	1,000분의10	2,500원	100kg

부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정선군고시 제2010-89호

-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-
매장·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고시

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 하늘공원 운영에 대한 매장·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. 6. 30

정 선 군 수

1. 매장·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

(단위 : 원)

구 분		관리비	석물비	매장비	비고
매장	단장	300,000	700,000	500,000	
	합장	390,000	800,000	500,000	
가족봉안묘(12기)		480,000	2,000,000	500,000	

주) ① 매장비에 석물설치비 포함

② 석물비중 글씨 가격은 별도

(큰 글씨 : 자당 8,000원, 작은 글씨 : 자당 800원)

③ 매장중 합장묘의 경우 와비에 새겨지는 글씨 추가에 대한

와비 운반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2. 적용시기 : 정선 하늘공원 개원시 적용

(단,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 발생시 변경고시 가능)

정선군공고 제2010-366호

방범용 CCTV 설치·운영을 위한 행정예고

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·운영에 대하여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. 06. 23.

정 선 군 수

1. 사 업 명 : 2010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
2. 시 행 청 : 정선군
3. 공고기간 : 2010.06.23~07.12(20일간)
4. 의견제출 : 2010.06.23~07.12(20일간)
5. 공고방법 : 정선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6. 근거법규 :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7. 설치장소

연 번	설 치 장 소		비 고
	위 치	세 부 장 소	
1	남면 무릉리 582-1번지	38국도 상행선	차량번호인식

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

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 출 처 : 정선군청 자치행정과

라. 제출방법

○ 우편 : (우)233-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

○ 팩스 : 033)560-2590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바. 공청회 개최계획 : 행정예고로 같음함.

9. 기 타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(☎560-22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방법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(안)에 대한 의견 제출

○ 성명(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행정예고(안)	의견제출(안)	사 유

정선군공고 제2010-376호

정선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(안)공고

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③의 규정에 의거 제2기정선군지역사회복지계획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10. 6. 24.

정 선 군 수

1.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

가. 계획수립의 실행주체 : 정선군수 ·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

나. 계획목적 :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고려한 지역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계획 수립

다. 적용기간 : 2011년 ~ 2014년

라.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~6(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/내용/시행/평가)
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7조의2~4(수립방법/시기/시행결과평가)
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방침결정안(주민생활지원실-38107호 2009,10,12)

2. 공고기간 : 2010. 6. 24 ~ 7. 13(20일간)

3. 계획의 주요내용 :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(안)-정선군 홈페이지 참조

4. 의견제출

가.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.7.13일까지 불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처 및 방법

이메일(daybreakwind@empal.com), FAX(033-560-2588)

우편(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)

5. 문의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서비스연계팀
(033-560-296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 견 수 렴 양 식

공모자 :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

분야	내용

정선군공고 제2010-380호

공 고

농업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0 착수 받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0. 06. 28.

정 선 군 수

1. 사 업 명 : 2010 착수 호명지구 받기반정비사업
2. 사업목적 :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단위 받정작지를 대상으로 농도, 배수로,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3. 사업물량 및 사업비

지 구 명	위 치	수혜면적 (ha)	사 업 비 (천원)	비 고
계	1지구	67.0	1,941,100	
호명지구	화암면 호촌리 일원	67.0	1,941,100	

4. 사업예정기간 : 2010년 08월 ~ 2011년 12월 30일
5. 사업효과
 - 영농기반구축으로 영농편의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도모
6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7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8. 열람장소 :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(TEL : 033-560-2373, 2444)
9. 기타사항 :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
정선군공고 제2010-382호

덕우리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취소 공고

정선군공고 제2010-335호(2010. 6. 4)로 공고한 2010년도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지역중 덕우리마을관리휴양지의 지정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☐ 취소 공고내용

공고번호	공고내용	지정 취소 휴양지명	취소사유
정선군공고 제2010-335호 (2010. 6. 4)	2010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지역 지정	덕우리마을관리휴양지 (덕산기계곡)	야영장 부지 사용불가

2010. 6. 28.

정 선 군 수